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87551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2098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87551 판결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이병철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연지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하여 2005. 11. 2.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D, E, 피고 C, 원고는 형제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1988. 11. 4. 별지 목록 기재 1, 5, 6, 7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8.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2. 20. 별지 목록 기재 2, 3, 4, 8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8.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E은 2005. 4. 7.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카합747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 4. 22.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5. 4. 26. 위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라. E은 2012. 11. 30. 피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4109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1. 9. E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4나20258호 사건에서 2015.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피고 C이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E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 피고 B는 2020. 2.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20. 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 피고 C, 원고는 1988년경 1,500만 원씩을 각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 C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서, D이나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을 이전해줄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D은 E에게 차용금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D의 권리를 이전하여 주었다.

나. D, E, 원고 등이 2005년경 피고들을 분묘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E이 항고하자 피고 C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2005. 11.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E의 지분이 1/3씩 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E에게 이를 이전해줄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을 ‘이 사건 이전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B가 2020. 2.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 E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이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이전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6에서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이전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작성한 항고장(갑 제6호증의 1), 항고취하서(갑 제6호증의 2)는 분묘훼손사건에 관한 것으로, 위 각 서류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항고취하서에는 항고 취하의 이유로 피고들이 형제들에게 잘못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사죄함을 받아들인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원고나 D이 E이 제기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각 진술(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이나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2) 및 인증서(갑 제8호증의 2)의 주된 취지는 D, 피고 C, 원고가 각 1,500만 원씩 투자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위 진술이나 작성 내용 중에 이 사건 이전약정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어 보인다.

3) E이 2005. 4. 14.경 피고 C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9호증)은 그 무렵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싼 다툼의 경과를 E 입장에서 정리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전약정이 있었던 시기(2005. 11. 2.경) 이전의 자료인바 이 사건 이전약정의 존부에 관한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4) E이 제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1심에서 E은 패소하였다. 비록 위 사건의 2심에서 피고 C이 E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의 성립에는 실체적 권리의 존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의 인도 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대로 이 사건 이전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이전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이전약정에 따른 지분 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을 대위해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지분 이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여서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별지]

## 목 록

|        |                                                                                   |          |
|--------|-----------------------------------------------------------------------------------|----------|
| 1. 파주시 |  | 답 4,726㎡ |
| 2. 파주시 |                                                                                   | 전 275㎡   |
| 3. 파주시 |                                                                                   | 전 1,771㎡ |
| 4. 파주시 |                                                                                   | 전 926㎡   |
| 5. 파주시 |                                                                                   | 답 106㎡   |
| 6. 파주시 |                                                                                   | 전 740㎡   |
| 7. 파주시 |                                                                                   | 전 744㎡   |
| 8. 파주시 |  | 전 896㎡   |

-이 상-